

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1. 3. 5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3. 5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3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양희준)

가. 제안이유

- 시설관리공단, 부천만화정보센터 등 시 출자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, 시민회관 등에 대하여,
-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(2000. 10. 20)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심의

나. 주요골자

○ 목 적

-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
-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·수익허가 하거나,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규정이 신설(2000. 10. 20)됨에 따라
- 현재 만화정보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, 복사골문화센터, 노상·노외·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함

○ 무상사용 대상 재산현황

구 분		시 설 명 명	복 사 골 문 화 센 터	시 민 회 관	북 부 도 서 관	주 차 장
시 설 물 현 황	소 재 지		상동 394--2	중동 788	도당동 13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상주차장 : 34개소 ※주차면수 : 2,917면 • 노외주차장 : 24개소 ※주차면수 : 2,196면 • 부설주차장 : 4개소 ※주차면수 : 1,111면
	대지면적		9,118.6㎡	21,717.1㎡	7,317㎡	
	건축면적		4,605㎡	3,418㎡	882㎡	
	연 면 적		31,097.71㎡	9,118.6㎡	2,890㎡	
	규 모		지하 2/지상 6	지하 2/지상 3	지하 1/지상 3	
무상사용기관			시설관리공단	시설관리공단	만화정보센터	시설관리공단
사 용 면 적			시설물전체	시설물전체	3층(824.7㎡)	공용주차면 전체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?	○ 무상입니다. 합법화시켜 주자는 동의안입니다.
○ 일반 영세법인은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혜가 아닌지? 무상으로 하면 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음	○ 출자법인이 현재 수익성에 흑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면 유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. 또한 조세를 제정해서 줄 수 있는 기관을 선택적으로 하겠습니다.
○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유상으로 하고 유상 사용 기간을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	○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3년 이내인데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동의, 당장 계약은 아니고 합법적인 근거만 마련하는 것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으로 행자부에서 해결책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승인 후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간을 명시함이 타당

나. 반대토론

- 원칙적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반대함. 향후 다른 출자법인도 지속적으로 무상사용을 허가해야 되므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유상필요
-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무상사용허가의 선례가 되는데 규제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무상사용 요구에 대한 검토 필요
- 무조건 동의는 안 되며 의회에서 유·무상 대상 기준을 만들어 동의하여 줌이 타당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시 출자 법인도 수익목적 법인과 비영리 공익성을 구분하여 유·무상 차등을 줌으로써 자극 필요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

의안번호	관련 제446호
의결년월일	2001. 3. 14 (제85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3. 5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주 문

○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

2. 제안사유

(안전)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

○ 시설관리공단, 부천만화정보센터 등 시 출자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, 시민회관 등에 대하여,

○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(2000. 10. 20)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심의

3. 주요내용

○ 목 적

-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
-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·수익허가 하거나,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규정이 신설(2000. 10. 20)됨에 따라
- 현재 만화정보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, 복사골문화센터, 노상·노외·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함.

○ 무상사용 대상 재산현황

구 분 \ 시설물명		복 사 골 문화센터	시민회관	북부도서관	주 차 장
시 설 물 현 황	소 재 지	상동 394-2	중동 788	도당동 13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상주차장 : 34개소 ※주차면수 : 2,917면 • 노외주차장 : 24개소 ※주차면수 : 2,196면 • 부설주차장 : 4개소 ※주차면수 : 1,111면
	대지면적	9,118.6㎡	21,717.1㎡	7,317㎡	
	건축면적	4,605㎡	3,418㎡	882㎡	
	연 면 적	31,097.71㎡	9,118.6㎡	2,890㎡	
	규 모	지하 2/지상 6	지하 2/지상 3	지하 1/지상 3	
무상사용기관		시설관리공단	시설관리공단	만화정보센터	시설관리공단
사 용 면 적		시설물전체	시설물전체	3층(824.7㎡)	공용주차면 전체

4. 검토 및 향후 처리계획

-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무상사용허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,
-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승인코자 함